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절차 삭제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우선 고려 조항 신설〉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36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절차 삭제(안 제23조제1항 개정)	2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우선 고려(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7
※ 참고자료	14
1.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현황	14
2. 특별재난지역 현황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3.
3. 회부연월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절차 삭제(안 제23조제1항 개정)

개정안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 지정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개정).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도지사는----- ----- -----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 -----접경지역에 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② (현행과 같음)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까지에서----- ----- ----- ----- -----.
---	---

현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수도권 내 지역의 시·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¹⁾ 중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1) <2025년 8월 기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현황> (참고자료 1)

-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4): 강화, 옹진, 가평, 연천
- 수도권내 접경지역(10):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가평

이와 같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지정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성장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검토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2025년 8월 현재 기준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해당 절차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고 있음.

이에 따라 지리적으로는 수도권으로 분류되나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도가 심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과 동등하게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정 절차 없이 시·도지사가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시·도지사가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수도권 지역들의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낙후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당초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는 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로써, 기본적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에 따른 예외 규정의 확대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의 정책효과,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를 포함한 지방투자촉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제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²⁾,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대표발의안)³⁾,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

2) 의안번호 제2200548호, 2024. 6. 17. 발의

3) 의안번호 제2201257호, 2024. 7. 1. 발의

성무의원 대표발의안)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제정안 논의 경과에 따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김상훈의원안	정진욱의원안	허성무의원안
제8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① 지방*에 소재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① 지방에 소재하는 시·도지사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수도권 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정의(제2조) 규정상 ‘지방’의 범위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		

4) 의안번호 제2209575호, 2025. 4. 3. 발의

2.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우선 고려(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u> 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수도권</u>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접경지역</u> 으로서 <u>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u> 는 <u>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u>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시·도지사는</u> ----- ----- ----- ----- -----, ---- <u>수도권의 경우 수도권</u> ----- ----- <u>접경지역</u> 에 한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 ⑤ (생 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제6항까지에서----- ----- ----- ----- -----.
---	---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는 개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한 후 현행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23조제3항 신설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최근 2년 이내에 산불·폭우 등과 같은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상당한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업기반 및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일정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음.⁵⁾

즉,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주된 목적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행정상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입법례들도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⁶⁾

뿐만 아니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특정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재정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판로확보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산업위기 극복 및 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취지의 법률이

6) <비교 입법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결한 시·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⁷⁾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주요 목적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 성장거점 마련에 있음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간 운영취지의 차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기운영 중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법 제23조제2항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기업의 투자계획, 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23조제3항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재난

7) <비교 입법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거나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지역 주된 산업에 대한 대응이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일 것

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적 요건에 대한 심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닌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특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적용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그런데, 개정안의 취지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시 우선 고려하게 될 경우, 시행일 이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도 개정안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현황

□ 인구감소지역(89개, '21.10월 지정)

- 수도권 내(4개) : 강화, 옹진, 가평, 연천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u>강화군, 옹진군</u>
경기(2)	<u>가평군, 연천군</u>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지정근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 접경지역(18개, '25.3월 지정)

- 수도권 내(10개) :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도천, 포천, 가평

구분	접경지역(17개)
인천(2)	<u>강화군, 옹진군</u>
경기(8)	<u>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u>
강원(7)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속초시

* 지정근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참고 2

특별재난지역 현황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 읍·면·동은 5~11억 초과

□ 주요 지원내용

-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
-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산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년도	구분	선포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용
2024	자연	7.15. 7.25. 8.13.	7.8.~19. 호우 관련 (7.15.)충북영동군,충남논산시·서천군,전북완주군,경북영양군입안면 (7.25.)충북옥천군,충남금산군·부여군,전북익산시,경북안동시,대전서구기성동,충남보령시주산면·미산면,전북군산시성산면·나포면,무주군무주읍·설천면·부남면,경북김천시봉산면,영양군청기면 (8.13.)경기파주시법원읍·적성면·장단면,전남당진시면천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0.15.	9.19.~21. 호우 관련 (10.15.)전남해남군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강진군군동면·작천면·병영면,영암군금정면·시종면·미암면,장흥군장흥읍·용산면,경남창원시웅동1동,김해시칠산서부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12.18.	11.26.~28. 대설·강풍·풍랑 관련 (12.18.)경기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충북음성군,강원횡성군안흥면·둔내면,충남천안시성환읍·입장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	12.29.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12.29.)전남무안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5	사회	3.8.	3.6. 천투기 오폭 사고 관련 (3.8.)경기포천시이동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3.22. 3.24. 3.27.	경북·경남·울산 산불 관련 (3.22.)경남산청 (3.24.)울산울주,경북의성,경남하동 (3.27.)경북안동,청송,영양,영덕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7.22. 8.6.	7.16.~20. 호우 관련 (7.22.)경기가평군,충남서산시·예산시,전남담양군,경남산청군·합천군 (8.6.)광주북구,경기포천시,충남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전남나주시·함평군,경북청도군,경남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광주광산구어룡동·삼도동,세종전동면,충북청주시옥산면·오창읍,충남서천군·판교면·비인면,전남광양시다압면,구례군간전면·토지면,화순군이서면,영광군군남면·염산면,신안군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경남밀양시무안면,거창군남상면·신원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연	9.18.	8.3.~14. 호우 관련 (9.18.)전남무안군무안읍·일로읍·현경면,함평군함평읍·대동면·나산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